4. 경신환국과 율곡의 문묘 종사

숙종이 서인을 배제하고 남인에게 정권을 넘기면서 그들의 집권이 언제고 계속될 것 같았지만 숙종 6년(1680년)에 상황은 급변했다. 남인 관료들을 이끌던 허적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허적은 그동안 영의정을 역임하면서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나라 재정을 관리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또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조정에서 축출한 뒤 윤선도, 윤휴, 허목과는 달리 온건론을 폈다. 위기에 처한 송시열을 사지에서 구해내는데 그는 큰 공을 이루어 서인들의 호감을 끌기도 했다.

1680년(숙종 6년) 3월 19일, 숙종이 70세가 된 허적에게 하사품으로 안석과 지팡이 그리고 음악을 내렸다. 4일 뒤 이조판서 이원정은 허적에게 미곡과 포목도 함께 내리도록 건의하여 임금은 흔쾌히 허락하였다. 이원정은 예송논쟁 때 활약한 남인 측 주요 인사 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허적은 같은 달 자신의 할아버지 허잠이 충정공의 시호를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연회를 위해 궁궐의 천막을 몰래 가져가 썼다. 임금이 허락하기 전이었는데 이 일이 발각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서인 측은 놓치지 않았다. 허적의 서자 허견이 역모를 획책했다고 숙종에게 보고하였다. 이일은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으나, 숙종은 당시 남인을 지지했던 마음을 거두고 허적 일당에게 사형을 명했다. 이때 남인계 관료 윤휴도 함께 사형당했다. 남인 지도자 허목도 조정에서 축출된 뒤 곧바로 사망을 하여 남인 정권은 순식간에 몰락하였다. 이것이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이 교체된 경신환국이다.

이처럼 정권 실세가 서인으로 바뀌면서 조정안에서 율곡이나 율곡의 사상 혹은 저작물을 언급하는 일이 많아졌다.

예를 들면 같은 해(숙종 6년) 7월 24일, 홍문관의 관원 오도일이 율곡의 『성학집요』를 숙종에게 권했다. 그는 "『성학집요』는 곧 선정신(先正臣) 이이가 지어 선조에게 올린 것으로, 그 글이 제왕의 학문에 가장 절실하므로, 선조께서도 그 글이 정치하는 방법에 보탬이 있다고 매양 일컬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한가한 때 읽어보면 반드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임금은 이러한 건의를 받아 홍문관에 명하여 베껴서 올리라고 하였다.

오도일은 8월 3일에도 숙종에게 "진덕수가 지은 『대학연의(大學衍義)』는 요점 정리가 모자랍니다. 이이가 『대학』의 뜻을 유추하여 해석하고 경적(經籍)을 모아 간추려 책 하나를 지었으니, 곧 『성학집요(聖學輯要)』입니다."라고 『성학집요』의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성학집요』가 학문하는 규모와 나라 다스리는 제도를 조목별로 나누고 적절한 내용이 모두 갖추어졌는데, 글이 번잡하지도 아니하고 간략하지도 아니하니, 진실로 제왕(帝王)이 정도(正道)에 들어가는 본보기이며 정치를 하는 지침서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1월 3일에는 부수찬 송광연이 임금의 상례 의복에 관한 상소를 올리면서 율곡이 정한 졸곡 후의 백의관대(白衣冠帶) 제도를 언급하였다. 그는 율곡이 "송나라 효종(孝宗)의 옛 제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이를 따르게 되어 마침내 우리나라의 예문이 되었고, 인선왕후(仁宣王后) 상사 때에도 이를 준용(遵用)했는데,

유독 이번에는 이미 시행한 예제(禮制)를 쓰지 않고 『오례의』의 예문을 쓰자는 것은 필시 대행 왕비의 상사는 인선왕후의 상사와는 다르다고 하여 이렇게 시행을 달리하는 모양입니다."라고 하면서 상례 의복에 재검토를 제안하였다.

조정에서 서인 관료들의 발언이나 활동도 이전보다 훨씬 자유스러워지고, 송시열은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그의 영향력은 다시 회복되었다. 정계에 대한 발언권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

숙종 7년 1월 13일 그는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대동법의 폐단을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고했다.

"국가에서 백성에게 신의를 잃은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대동 면포(大同綿布)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제일 심합니다. 당초에 대동법을 창설할 때는 고 상신(相臣) 김육(金堉)이 규례를 정하기를, '쌀은 먹을 수 있는 것이면 그만이고, 면포는 가늘기가 6승이고 길이가 35척이다.' 하고, 견본이 되는 면포를 각 고을에 내려보냈는데, 뒤에 와서 점차 제도의 효과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각 고을에서 규정에 맞는 면포를 바치지만 서울에 이르면 서리들이 그것을 모두 질 나쁜 제품으로 바꾸어 바친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백성은 피를 빼앗기고 아전은 배를 두드린다고 하며 율곡이 일찍이 '우리나라는 서리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라고 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임금이 이점을 유념하기를 요청했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3일 뒤에 숙종은 송시열을 불러 면포 징수 문제를 논하고 해당 관청에서 폐단을 고치도록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의 폐단과 군역 징발의 대상이 되는 양민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송시열은 율곡이 이전에 종이 양민의 딸을 처로 얻을 경우 아버지를 따라 종이 되는 것을 고쳐 어머니를 따라 양민이 되도록 하면 양민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같은 달 19일에도 평안감사 유상운(柳尙運)의 보고를 받고 율곡의 양천 종모법, 즉 천민이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 신분을 따른다는 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유상운의 보고에 따르면 기유년(1669년, 현종 10년) 이후에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이 양민의 딸에게 장가들어 자식을 낳을 경우 시행령에 따라 양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조정에서 그 시행령을 거두어서도로 천민으로 삼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유상운은 "그 사람들이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조정에서 신의를 잃는 것으로서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양인(良人)은 어머니를 따른다는 의논이 선정신(先正臣) 이이로부터 비롯되어 기유년에 송시열이 아뢴 바로써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고, 폐단 없이 시행해 왔는데, 을묘년(1675년, 숙종 원년)에 이원정(李元禎)이 형조 판서가 되어 갑자기 취소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이니, 지극히 한심합니다."라고 하여 다시 양천 종모법을 시행하도록 요청하였다. 남인 집권시기에 양천 종모법을 취소해던 것이다. 숙종은 다시 회복하도록 하였으나 1689년(숙종 15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잡자 남인의 말을 들어 양천 종모법을 또 취소하였다.

당시 숙종은 세자빈으로 궁중에 들어와 왕비가 된 인경왕후가 천연두로 사망한 뒤 새로운 부인을 찾고 있었다. 이에 숙종 7년 3월 4일 송시열은 상소문을 올려 중전 간택에 신중할 것을 건의하면서 율곡의 『만언봉사』를 이렇게 소개했다.

"전하께서는 주자가 진관(陳瓘)의 서첩(書帖)에 쓴 발문(跋文)의 말과 문성공 이이의가 『만언봉사』에서 진술한 말을 신하들에게 살펴보게 하시고, 이를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그러면 이른바 호연지기(浩然之氣)란 것이 전하의 성학(聖學)이 어찌 천지 사이에 더욱 채워지지 아니하겠으며, 이른바 만복(萬福)의 근원이란 것도 또한 어찌 천만세(千萬世)에 영구히 미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자가 쓴 발문의 말이란 이욕과 의리 사이에서 이욕을 버리고 의리에 따라 행동하라는 말을 뜻한다. 율곡이 『만언봉사』에서 진수란 말은 여색을 경계하라는 말을 지칭한다. 율곡의 가르침을 다시 상기시키는 건의였다.

이렇게 조정에서 서인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송시열 등 서인 원로들의 궁중 출입이 잦아지면서 서인의 구심점이 되는 율곡과 우계의 문묘 종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680년(숙종 6년) 8월에 황해도 생원 윤하주(尹夏柱) 등이 율곡과 우계에 대한 문묘 종사를 요구하는 상소문을 3차례에 걸쳐 올렸다. 임금은 선대 조정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거부하였다. 하지만 1681년(숙종 7) 9월 18일에 이연보 등 성균관 소속의 팔도 유생 500여 명이 또다시 율곡 등에 대한 문묘 종사를 청했다. 이들은 동시에 송나라 조정의 3현, 즉 양시(楊時)·나종언(羅從彦)·이동(李侗) 등에 대한 문묘 종사도 요청하였다. 숙종은 이러한 요구에도 "가볍게 허락하기 어렵다."는 답을 내놓았다.

다음 날, 경연의 자리에서 강론과 토론 등을 담당하는 검토관 송광연(宋光淵)이 이렇게 요청하였다.

"유생(儒生)들의 상소 내용대로 문묘 종사의 전례를 빨리 거행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말했다.

"마땅히 잘 생각해서 처리해야 한다."

송광연이 또 이렇게 요청했다.

"영중추부사 송시열이 올린 『심경석의(心經釋疑)』 신본(新本)을 즉시 인쇄하게 하여 경연에 참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올린 상주문을 그 책 앞에 다 붙여 함께 출간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임금이 답했다.

“그(송시열)가 수정한 책자와 상주문의 내용을 보니, 명백하여 잘 깨달을 수 있었다. 이이가 편찬한 『성학집요』도 그가 올린 상주문을 붙여서 간행하였으니, 이 글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번에는 경연청 지사 여성제(呂聖齊)가 이렇게 말했다.

“9일에 있을 반시(泮試, 성균관에서 보는 한성 초기)를 다음날로 미뤄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생들이 지금 또 문묘 종사에 관한 상소를 하려고 하면서 말하기를 ‘상소에서 건의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구태여 시험에 나아가지 않겠다.’고들 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뒤로 시험을 미뤄서 행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만약 다시 상소문을 올리면, 내가 비답을 내린 뒤에 가서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니, 일부러 시험을 미뤄서 행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생각해보면 임금의 뜻은 유생들이 상소문을 또 올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임금은 그것을 기다렸다가 허락하려고 한 것이었다.

숙종은 9월 19일 이연보 등이 전날에 이어서 다시 상소를 하자 드디어 담당 판서와 대신들에게 율곡과 우계의 문묘 종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당일 유생들이 다시 상소문을 올리자 임금을 이렇게 답을 하였다.

“양현(兩賢)의 도덕과 학문은 실로 한 세대에서 우러러 사모하며 사림의 모범이 되니, 문묘에 종사하는 것을 누가 불가(不可)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대대로 조정에서 일찍이 윤허하지 않았으며 또 내가 과단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미루었던 것은 모두 신중하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인사들의 건의가 오래도록 계속되었고, 또한 간절해서 끝내 억지로 거부하기 어려우니, 그것을 해당 관서가 대신들에게 물어서 특별히 오현(五賢·율곡·우계와 중국 유학자 3인)을 종사하는 건의를 윤허할 수 있도록 하라.”

이에 김수항·김수흥·정지화·민정중·이상진 등 각 대신에게 문묘 종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들 모두가 종사에 찬성 의견을 냈다. 그래서 임금이 명하기를, “대신들의 의논이 모두 이와 같으니, 지난번 상소한 대로 문묘에 올려서 배향하도록 비답한다.”라고 하였다.

이전의 왕들이 무수히 많은 문묘 종사 요청을 계속 거절한 것을 생각해 보면, 숙종의 이번 허락은 의외로 시원스럽고 호탕한 것이었다. 당시 영의정 허적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남인들을 모조리 궁중에서 몰아낸 것을 생각해 보면, 숙종의 선선한 허락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롭게 불러들인 서인 관료들에 대해서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의 표시였고 앞으로 기대한다는 일종의 선물이었던 셈이다.

결국 율곡과 우계 성혼, 그리고 송나라의 세 선현(양시.나종언.이동)에 대한 문묘 종사가

결정되었다. 실제로 이들이 문묘에 종사된 것은 그 이듬해(1682년, 숙종 8년) 5월 20일이었다. 이로써 60년 가까이 끌어오던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가 일단락되었다.